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수 산 직 접 지 불 제 시 행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전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해양수산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이 수산분야에 공익직불제를 도입하는 등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법률 제17331호, 2020. 5. 26. 공포, 2021. 3. 1. 시행)함에 따라, 경영이양·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제 운영에 필요한 지급요건, 지급절차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직불금 수급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 및 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법률 제명이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의 제명도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

나.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안 제3조~제11조)

1)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의 운영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 시행을 위해 어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거나 고소득·고재산자는 제외하도록 신청요건을 정하고, 어촌마을 공동기금은 직불금의 20% 이상을 지급토록 정함.

2)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운영

어촌공동체 유지와 활성화를 위해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 시행을 위해 어촌계 영구탈퇴와 소득요건 등을 신청요건으로 정함.

3)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의 운영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수산자원 보호 직접지불제도 시행을 위해 총허용어획량 할당, 어선 감척 등을 준수사항으로 정하고,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선정하고,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직접지불금을 지급토록 함.

4)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의 운영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인증을 받았거나,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사료사용을 제한하는 친환경어업을 수행한 경우, 각각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준수와 배합사료 사용을 준수사항으로 정하고,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직접지불금을 지급토록 함.

다. 준수의무와 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5조)

직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등에 관한 사

항을 교육받고, 「수산업법」 등의 수산관계법령을 준수토록하며, 어업경영체 등록, 생태계 교란 생물 반입 금지 등의 추가 준수사항을 정함. 아울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자치도지사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정보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제21조)

준수사항 이행여부, 지급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 등·초본, 소득자료 등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와,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위한 사무 범위를 정함.

마. 지도 등에 관한 사항(안 제18조~제19조)

직불금의 투명한 집행 등을 위해 직불금을 수급하는 어업인등과 위임·위탁기관의 소관업무에 대해 지도·감독·관리를 실시하고, 법령 위반시 개선조치를 하도록 하고, 개별 직불제별로 관리기관을 지정함.

바.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공익직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동해·서해·남해 어업관리단장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위임함.

사. 과태료에 관한 사항(안 제22조)

조사·열람 등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100~300만원, 준수사항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10~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기획재정부와 '21년 예산 협의 중

다. 합 의 : 관계기관 의견조회 예정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수산업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수산업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운영

제1절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

제2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의 신청) ①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어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를 말한다. 다만,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

인 일용근로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의 조합원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에 종사하는 어업인은 제외한다.

②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어가 또는 어업인”이란 어업인이나 어업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신청 연도의 전년도에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중 최상위 등급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적용받은 경우

2.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신청 연도의 전년도에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중 최상위 등급 및 그 직전 등급의 과세표준을 적용받은 경우

제3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운영위원회 구성)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계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동·리(里) 지역 또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동·리 지역 단위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4조(어촌마을 공동기금 지급액)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말한다.

제2절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

제5조(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등) ① 법 제14조제3호에 따라 어촌계의 계원 자격을 이양하려면 소속 어촌계 총회 의결을 거쳐 신규로 소속 어촌계의 계원 자격을 얻고자 하는 만 55세 이하의 어업인(이양하려는 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은 제외한다)에게 어촌계의 계원 자격을 이양하고 해당 어촌계를 영구적으로 탈퇴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연도의 직전 3년간 결산소득이 있거나 특별자치도지사등이 이에 준하는 서류로 인정하는 결산소득이 있는 어촌계의 계원일 것을 말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등과 약정을 체결한 자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약정이 해제된 경우
2. 약정을 해제 또는 해지한 자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되어야 하는 금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제3절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

제6조(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및 기준)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은 별표 1과 같다.

②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은 소규모어선직접지불금과 톤수비례직

접지불금 등으로 구분한다.

제7조(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 방법과 절차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관리법」 제54조에 따른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와 지급대상어선을 선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 및 지급대상자와 지급대상어선 선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 제6조제1항에 따른 지급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점검하고 지급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지급대상어선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총톤수 이하의 어선일 경우 소규모어선직접지불금을, 그 밖의 어선인 경우 톤수비례 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4절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

제9조(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및 기준) ①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은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한다.

1.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준수 의무를 이행하고,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할 것(「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에 따라 육상해수양식업 또는 육상 등 내수양식업으로 허가받은 양식업체에 한한다)
2.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준수 의무를 이행하고, 「사료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합사료(이하 “배합사료”라 한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배합사료를 사용할 것

②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급한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 인증을 받은 어업인등 또는 회사로서, 제9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 유기수산물 직접지불금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항생제 등의 인증을 받은 어업인등 또는 회사로서, 제9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 무항생제 등 직접지불

금

3. 「양식산업발전법」 제5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는 어업인등 또는 회사로서, 제9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 배합사료 직접지불금

제10조(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신청 방법과 절차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그 밖에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 및 지급대상자 선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 제9조제1항에 따른 지급요건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지급요건을 이행하였을 경우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장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사후관리

제12조(교육이수) ① 법 제19조제1호에 따라 공익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지불금(이하 “공익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자가 받아야 하는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과 어업인등의 역할
 2.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 및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관련 어업인등의 준수사항
 4. 그 밖에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교육시설과 인력을 갖춘 공공기관 및 생산자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실시 및 교육기관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수산관계법령의 준수) 법 제19조제2호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가 준수해야하는 수산 관계법령은 별표2와 같다.

제14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 법 제19조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별표 1 및 별표 3과 같다.

제15조(공익직접지불금 준수사항 조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장부나 서류의 열람을 위해 필요

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법 제19조, 제20조제4항 및 제20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 및 지급대상자의 의무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 및 처분의 결과 등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자치도지사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익직접지불금 준수사항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16조(채납가산금 요율) 법 제22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00분의 6을 말한다.

제4장 보칙

제17조(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자정보시스템(이하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리시스템”이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자료 요청 사유
2. 자료 요청 기간
3. 자료 제공 범위 및 방법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제공하는 자료는 해당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자료로 한정되고, 자료를 제공받은 기관은 해당 자료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8조(지도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도·감독·관리(이하 “지도 등”이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법 제14조에 따른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법 제17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및 법 제18조에 따른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어업인등과 회사

2. 법 제2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기관(읍·면장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자에 대해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도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매년 지도 등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관리기관 및 시·도 소속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합동점검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도 등의 결과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업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9조(관리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도 등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관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 관리기관 및 법 제14조에 따른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 관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 관리기관 : 동해·서해·남해 어업관리단
3. 법 제18조에 따른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 관리기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과 공익직접지불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익직접지불금 지급과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단속
2. 법 제21조에 따른 지급제한, 법 제22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등과 관련된 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지도 및 단속
3. 그 밖에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 및 공익직접지불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③ 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도 등의 시행계획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추진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동해·서해·남해 어업관리단장에게 위임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지급요건 충족여부 점검
2.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서류 등의 보관·비치 의무 확인(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 한함)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0조제1항·제2항에 따른 조사·장부나 서류의 열람(다음 각 목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 가. 법 제19조제3호 및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준수사항
 - 나.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서류 보관·비치 의무(법 제19조에 따른 준수사항 중 이 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으로 한정한다)
2.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이 항 제1호에 따른 조사 및 서류의 열람에 관한 위반행위로 한정한다)
3.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19조에 따

른 준수사항 중 이 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의 보관·비치 의무에 관한 위반행위로 한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위임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보호 지급 신청 접수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한 업무

2. 제9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제10조에 따른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 신청 접수, 지급대상자 선정 및 제11조에 따른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의 지급

3. 법 제20조제1항·제2항에 따른 조사·장부나 서류의 열람(다음 각 목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법 제19조제1호에 따른 교육 이수

나. 법 제19조제2호에 따른 수산관계법령 준수

다. 법 제20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서류 보관·비치 의무(법 제19조에 따른 준수사항 중 이 호 가목, 나목 및 이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으로 한정한다)

4. 법 제21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5. 법 제22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가산금의 부과·징수

6. 법 제24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의 정보 공개 및 이에 대

한 이의신청의 접수·조사·통보

7.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④ 동해·서해·남해어업관리단장,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법 제19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교육 업무를 소속기관, 공공기관 또는 생산자단체에 위탁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과 위탁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1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① 해양수산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7조 및 제18조, 이 영 제 6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른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및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금의 지급요건 및 준수 의무 확인, 신청 접수 및 지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20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무

3. 법 제21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에 관한 사무
 4. 법 제22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가산금의 부과
· 징수에 관한 사무
 5. 법 제23조에 따른 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24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의 정보 공개 및 이에 대
한 이의신청의 접수·조사·통보에 관한 사무
 7. 법 제25조에 따른 지도·감독·관리에 관한 사무
 8. 법 제27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경비의
지급에 관한 사무
 9. 법 제28조에 따른 신고의 처리 및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10. 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 ② 특별자치도지사등(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
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와 「재외동
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
신고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신청 접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의 접
수,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신청 어업인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
확인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15조에 따른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신청 접수 및 신청 어업인의 자격 유무 및 적격여부 확인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16조에 따른 약정 체결 및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한 사무
6. 법 제27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위촉·감독·운영 및 경비의 지급에 관한 사무

제5장 벌칙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한 처분조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및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영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조치, 이 영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및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

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한 지급요건(제6조제1항 관련)

1.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의무 중 기본의무를 모두 준수할 것

나.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의무 중 선택의무 1개 이상을 준수할 것(단,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필요시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연·근해 어업의 업종별로 선택의무 중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최소 조업일수 이상 성실히 조업할 것

2.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규제를 강화하여, 조업감소 등에 따른 심각한 경영악화가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2]

수산물관계법령(제13조 관련)

1. 「수산업법」
2. 「어선법」
3. 「어선안전조업법」
4.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 「낙시 관리 및 육성법」
6. 「어업자원보호법」
7. 「양식산업발전법」
8. 「어장관리법」
9. 「내수면어업법」
10. 「소금산업진흥법」
11. 「원양산업발전법」
12. 「수산종자산업육성법」
13. 「식물신품종 보호법」
14. 「수산자원관리법」
15.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6.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7.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18.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1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20. 「수산생물질병관리법」
21.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2. 「수산업협동조합법」

[별표 3]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제14조 관련)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된 어업경영정보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할 것
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을 하지 않을 것. 다만,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4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4]

제공요청 대상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제17조제2항 관련)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자료
2.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관한 자료
3. 「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어업경영정보의 등록,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에 관한 자료
4. 「농어업재해보험법」 제4조에 따른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관한 자료
5.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에 따른 수산업에 관련된 용자·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6.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휴업·폐업 정보를 포함한다)
7.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 등에 관한 자료
8.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관한 자료
9.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교육훈련사업에 관한 자료
10. 「수산업법」 제8조, 제41조 및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에 따른 면허·허가에 관한 자료
1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어촌계에 관한 자료
12. 「수산자원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사·평가,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어획물 등의 조사, 제19조에 따른 휴어기의 설정, 제20조에 따른 조업척수의 제한, 제36조에 따른 총허용어획량의 설정에 관한 자료
13.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중앙회 및 그 자회사가 보유한 사료 등의 어업자재 공급에 관한 자료
14.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제43조에 따른 면허·허가에 관한 자료 및 동법 제54조제2항제6호에 따른 환경관리를 위한 사료사용의 제한 및 금지에 관한 자료
15.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어업실태조사, 제3장에 따른 어선·어구감척사업의 추진에 관한 자료
16.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가 포함된 자료
17.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따른 어업용 면세유의 유종별 공급에 관한 자료

18.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자료
19.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20.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21.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의 수용에 관한 자료
2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실태조사·평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에 관한 자료
2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교정시설에의 수용에 관한 자료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가. 법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사·열람 등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나. 법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지급 및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을 비치·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2호	10만원	20만원	30만원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연 락 처	(044) 200 - 5461